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2018.11.

국토교통부

통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은 그간 공공분양주택건설, 서민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주택보급률과 주거수준 향상 등 우리나라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앞으로도 주택수급 불균형, 전세문제,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문제 등 산적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국민주택채권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임.

- ▶ ② 채권을 매입해서 되팔아버리니 은행만 돈 벌게 해주는 게 아닌가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보유시 연 1.75%의 이율('17.1.1 현재)을 복리로 적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하게 되며, 채권매입자들이 원할 경우 할인금액으로 즉시 매도할 수도 있음. 이와 같이 즉시 할인하여 매도하는 경우 채권의 할인금액은 해당채권의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은행이나, 즉시 매도한 채권을 인수하는 증권사도 현재 가치로 환산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일 뿐 당초 채권매입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발행은행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증권사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님

15. 재외국민 채권매입관련(추가)

- ▶ 실명확인번호는 내점시 여권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출입국관리 사무소) / 등기용등록번호는 과거 주민번호나 대법원 관할 소재지에서 부여하는 번호로 사용 가능

16. 법인 명의로 채권매입 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인 신규법인인 경우 채권 매입 방법(추가)

- ▶ 법인의 대표자 개인명의 기재(대표자 주민번호 및 법인명 부기)하여 채권 매입 가능